P-134-2013

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13. 9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이창규
- Ο 제정 경과
 - 2013년 09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- CCPS "Guideline for Engineering Design for Process Safety", 1993
 - Frank P. Lees, "Loss Prevention in Process Industries", Butterworth & Co Ltd. 1980, N.Y, 1979
 - William D. Baasel, "Preliminary Chemical Engineering Pant Design", Elsevier Pub. Co. N.Y, 1976
 - ESSO "Process Safety Manual", 1980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3년 9월 2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P - 134 - 2013

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공장을 설계할 때 공장 내에서 설비들 간에 안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배치하고, 설비들을 정비·보수 시 설비와 설비 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공장을 설계하고, 설비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인화성 유체"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<별표 1>에서 규정하는 인화성 액체와 인화성 가스를 말한다.
 - (나) "단위공정시설 (Unit)"이라 함은 하나의 공장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도로로 구획된 곳에 배치되는 공정설비들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설비 배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

4.1 일반사항

(1) 설비배치를 계획할 때에는 먼저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P - 134 - 2013

- (2) 그 밖의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권고 사항이나 설계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안전거리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(3) 안전거리를 줄여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줄이는 대신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설비나 소화설비들을 강화하여야 한다.
- (4) 설비 배치에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사고의 억제
 - (나) 높은 잠재위험이 있는 운전
 - (다) 서로 다른 위험들의 격리
 - (라) 폭발압력에 노출
 - (마) 화재 복사열에 노출
 - (바) 손상을 받는 배관의 최소화
 - (사) 배수 및 지반의 경사도
 - (아) 주풍향
 - (자) 향후 확장 계획

4.2 주풍향의 고려

- (1) 공장을 신설할 때에는 그 지역의 주풍향을 결정하고,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.
 - (가) 풍상측(Up wind)에 배치되는 설비들은 <표 1>과 같다.
 - (나) 풍하측(Down wind)에 배치되는 설비들은 아래와 같은 설비들이 있다.
 - ① 인화성 유체를 누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기
 - ② 블로우다운 탱크(Blowdown tank)
 - ③ 플레어스택 등 소각설비

P - 134 - 2013

④ 침사지

<표 4> 풍상측에 배치하는 설비들(예시)

공장 사무실 전력실 및 변전실 중앙 실험실 물 처리설비 정비실 등 기계실 냉각탑 사무실 건물 공기압축기실 주 용수펌프 구내식당 저장창고(위험물질 이외) 의료 건물 보일러실 가열로 모든 점화워 방재실

- (2) 인화성 유체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설비나 기기들은 풍하측에 배치하여 누출이 되는 경우에도 나화(Open flame)나 고온의 표면(Hot surface)에 있는 지역에 인화성 유체가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.
- (3) 인화성 유체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설비나 기기들은 풍하측에 배치하여 누출 이 되는 경우에도 전기실(Power house), 보일러 용수펌프 및 공기 공급설비는 다른 설비들로부터 75 m 이상 떨어지게 배치한다.
- (4) 보일러나 가열로의 폭발로 유틸리티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5) 이웃한 다른 공장의 설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.

5. 공정지역의 배치

5.1 일반사항

(1) 배치방법에는 그룹 배치(Grouped layout) 방법과 공정흐름 배치(Flow line layout)

P - 134 - 2013

방법이 있다.

- (가) 그룹배치는 회분식 반응기 10개를 같은 장소에 배치하는 등 비슷한 설비들을 이웃에 배치하는 방법으로, 이 방법은 조작이 쉽고, 어떤 단위공정시설(Unit)에서 다른 단위공정시설로 전환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, 조작원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.
- (나) 공정흐름배치 방법은 공정흐름도(Process flow diagram)의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방법으로, 물질의 이송거리가 작아서 물질이송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.
- (2) 제어실, 전기실, 압축기 및 가열로 등의 위치는 부지내의 조건들뿐만 아니라 다른 단위공정시설에 접근성, 주 접근 도로 및 풍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3) 소화설비들의 접근로는 공장내 모든 단위공정시설과 단위공정시설 사이에 있어야 하며, 접근로의 폭은 최소 6 m 이상으로 한다.
- (4) 공장의 정기보수를 위하여 크레인, 화물차 및 지게차등 이동식 장비들의 통제와 화기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이 잘 통제되는 경우 15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둔다.
- (5) 크레인, 화물차 및 지게차등 이동식 장비들의 통제와 화기작업 과 같은 위험작업 이 잘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25 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 한다.

5.2 공정설비

(1) 압축기

- (가)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압축기는 다른 설비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배치하여 야 한다.
- (나) 여러 대의 대형 압축기들은 한 곳에 모아 배치하고, 인터쿨러(Inter-cooler)나 녹아웃 드럼과 같은 관련 설비들도 함께 배치한다.
- (다) 여러 대의 압축기를 한 곳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설비들과 7.5 m 이상의 거리를 확보 한다.

P - 134 - 2013

- (라) 압축기실은 화재 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최소 2곳의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 도록 하여야 한다.
- (마) 공기나 불활성 가스를 취급하는 압축기는 압축기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며, 안전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(2) 터빈 등

가스터빈, 디젤 또는 가스엔진은 누출원과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, 인화성 유체를 취급하는 다른 터빈 등이나 설비들과 10 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배치한다.

(3) 공냉식 냉각기

- (가) 공냉식 냉각기는 화재에 노출될 경우 보통의 열교환기(Shell and tube heat exchanger)보다 피해가 크다.
- (나) 공냉식 냉각기는 인화성 유체를 취급하는 펌프나 압축기의 상부에는 배치하지 아니한다.
- (다) 드럼이나 열교환기의 상부에도 배치하지 않으며, 특히 300 °C 이상의 온도에서 운전되는 열교환기 상부에는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.
- (라) 주요한 배관들의 상부에 배치하지 아니한다.
- (마) 증류탑 등의 탑이나 가열로의 반대쪽에 이격하여 배치한다.
- (바) 펌프, 탑, 드럼 및 열교환기와 3 m 이상 거리를 두어 배치한다.

(4) 변전실 등

- (가) 변전실 등은 폭발위험이 없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폭발위험지역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에 따른다.
- (나) 다른 설비들과 15 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배치한다.
- (다) 변전실 등의 바닥은 지면에서 0.6 m 이상 높게 한다.

(5) 열교환기

대형의 열교환기나 300 ℃ 이상의 온도에서 운전되는 열교환기들은 탑 등 주요 설

P - 134 - 2013

비들과 4.5 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배치한다.

(6) 가열로

- (가) 가열로는 불꽃이 항상 존재하는 점화원으로, 보통 주변의 단위공장과 설비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공장의 경계선 근처에 배치한다.
- (나) 인화성 유체를 취급하는 용기들은 가열로 외벽으로부터 15 m 이상 거리를 둔다.

(7) 펌프

- (가) 펌프들은 중요한 인화성 액체의 누출원이기 때문에 모든 점화원에서 가능한 한 떨어지게 배치하여야 한다.
- (나) 탑이나 드럼을 보호하기 위해 탑이나 드럼의 바로 아래에는 펌프를 배치하지 아니한다.
- (다) 펌프의 상부에는 펌프의 정비·보수를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관 등이 지나지 않도록 공간을 두어야 한다.
- (라) 300 ℃ 이상의 온도에서 운전하는 펌프들은 다를 펌프들과 격리하여 배치하여 야 한다.

5.3 제어실

- (1) 제어실의 위치는 폭발이나 화재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배치한다.
- (2) 단위공장의 제어실은 다른 공정기기들과 최소한 15 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배치하여야 하며, 중앙 제어실은 30 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배치한다.
- (3) 제어실은 공정은 운전하는 기본적인 용도이외에 실험실 등 다른 목적의 부대시설을 가능한 한 함께 배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(4) 제어실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야 한다.
 - (가) 폭발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P - 134 - 2013

- (나) 제어실은 철근콘크리트로 건축하여야 한다.
- (다) 제어실은 지상 1층으로 하여야 한다.
- (라) 지붕은 비산물이 떨어져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- (마) 창문은 없거나 최소화 하고, 폭발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, 유리로 된 내부 출입문은 설치하지 아니한다.
- (바) 환기나 에어컨을 위한 공기의 흡입구는 지상에서 최소 12 m 이상의 높이에 두어야 한다.

5.4 도로 및 파이프랙 등

- (1) 모든 도로는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.
 - (가) 양방향의 통행을 위해서 도로의 폭은 최소 6 m로 한다.
 - (나) 원활한 회전을 위해 안쪽의 반경은 최소 6 m, 외측 반경은 최소 12 m로 한다.
- (2) 파이프랙의 배치는 배관에서 누출이 일어나는 경우 파이프랙 아래에 있는 설비나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.
- (3) 다음의 <표 2>는 주요 설비를 배치할 때 고려해야 할 여유 공간을 예시한 것이다.

P - 134 - 2013

<표 5> 주요 설비를 배치할 때 고려하여야 할 여유 공간

구 분	여 -	유 공 간(m)			
工 证	수 평	수 직			
주 도로	10	5.5			
2차 도로	7.5	5.0			
철도	15	7.0			
주 파이프랙	4.8	5.0			
2차 파이프랙	3.0	3.6			
상부배관(Overhead piping)	_	2.0			
19 kW 이하 소형 펌프 기초	0.8	2.0			
19 kW 이상 대형 펌프 기초	1.0	4.5			
압축기 및 주변설비	3.0	보수에 필요한 높이			
직립형 용기	3.0	_			
직경 3 m 미만 수평형 용기	1.2	1.2			
직경 3 m 이상 수평형 용기	2.4	-			
수평형 열교환기	1.2	1.0			
가열로와 인근설비	15	-			
조정실, 반응기 및 주요 설비 지지대	10	-			

6. 저장지역의 배치

- (1) 인화성이나 독성이 없는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들은 풍상측에 배치하여야 한다.
- (2) 인화성이나 독성이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들은 풍하측에 배치하여 누출이 되는 경우에도 인화성 유체 증기가 점화원에 그리고 독성물질의 증기가 사람이 많이

P - 134 - 2013

상주하는 곳으로 도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- (3) 내용물이 누출되어 공정설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들은 풍상 측에 배치해서는 아니 되며, 이들 탱크는 다른 설비와 최소 7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4) 탱크는 공정지역으로부터 멀리 이격시켜 공정지역의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많은 량의 위험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.
- (5) 위험물질을 배로부터 하역하거나 배로 선적하는 지역으로부터 150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6) 탱크를 공정지역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탱크의 화재를 대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(7) 저장탱크는 그룹으로 배치하여 공동 방유제를 설치하여 소화설비는 각 그룹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8) 저장탱크의 방유제 내에는 NFPA 30에 따라 탱크이외의 기기, 설비 및 전기설비를 두지 아니하며 밸브나 플랜지의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.
- (9) 보험회사에서 권장하는 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<표 3>과 같다.

P - 134 - 2013

<표 6> 저장탱크간의 안전거리

저 장 탱 크	A	В	С	D	Е	F	G	Н	Ι
부유식, 고정식 지붕탱 크, 500 kL 이하 (A)	0.5D								
부유식 지붕탱크, 500 kL 이상 1,500 <i>Kl</i> 이하 (B)	0.5D	0.5D							
부유식 지붕탱크, 1,500 ~ 45,000 kL 이하 (C)	1D	1D	1D						
잠보 부유식 지붕탱크, 45,000 kL 이하 (D)	1D	1D	1D	1D					
고정식 지붕탱크, ii,iii등 급 제품저장, 1,500 ~ 45,000 kL (E)	0.5D	0.5D	1D	1D	1D				
고정식 지붕탱크, i 등급 제품저장, 1,500 ~ 45,000 kL (F)	1D	1D	1D	1D	1D	1D			
구형 압력탱크 등(G)	1.5D 최소 30 m	1.5D 최소 30 m	1.5D 최소 30 m	2D	1.5D 최소 30 m	1.5D 최소 30 m	1.5D		
압력저장용기(드럼등) (H)	1.5D 최소 30 m	1.5D 최소 30 m	1.5D 최소 30 m	2D	1.5D 최소 30 m	1.5D 최소 30 m	1D 최소 30 m	1D	
돔지붕형, 냉동 탱크 (I)	2D 최소 30 m	2D 최소 60 m	2D 최소 60 m	2D	2D 최소 60 m	2D 최소 60 m	1D 최소 30 m	1D 최소 30 m	1D 최소 30 m

주) D; 가장 큰 탱크의 직경을 말하며, 등급 ii,iii 는 NFPA 30의 분류임.

7. 설비의 안전거리

- 7.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
 - (1) 규칙 제271조(안전거리)의 내용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

P - 134 - 2013

하고 있다.

<표 7> 별표 8의 내용

	구 분	안 전 거 리
1.	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의 사이	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 m 이상
2.	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,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 질 하역설비의 사이	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 m 이상. 다만,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 된 지붕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
3.	위험물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,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	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 m 이 상. 다만, 저장탱크의 방호벽,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하다.
4.	사무실·연구실·실험실·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, 위험물질 저장탱크, 위험물질 하역설비,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	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 m 이 상. 다만,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구조를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2)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 공지를 유지하거나, 법 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7.2 보험회사가 권장하는 안전거리

- (1) 석유화학공장 배치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거리는 <표 5>와 같다.
- (2) 단위공장내의 안전거리는 <표 6> 및 <표 7>과 같다.

P - 134 - 2013

<표 8> 석유화학공장 배치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거리

단위: m

	А	В	С	D	Е	F	G	Н	I	J	К	L	М	N	О	Р	Q
А	/																
В	/	/															
С	15	15	/														
D	15	15	30	15													
Е	/	/	30	30	/												
F	30	30	30	30	30	10											
G	30	30	30	30	30	10	10										
Н	30	30	30	30	30	10	10	10									
I	60	30	30	30	60	15	15	30	30								
J	120	60	60	75	30	30	60	60	60	60							
К	75	75	75	75	75	75	75	75	90	105	*						
L	105	105	105	105	105	105	105	105	105	105	*	*					
М	105	105	105	105	105	105	105	105	105	105	*	*	*				
N	100	100	100	100	100	100	100	100	100	100	100	120	120	/			
0	60	60	60	60	60	60	60	60	60	90	75	105	105	90	15		
Р	15	15	15	15	15	60	60	60	90	90	105	105	105	90	60	/	
Q	15	15	15	15	15	60	60	60	90	90	105	105	105	90	60	/	/

A: 서비스빌딩

B; 변전실 등

C; 유틸리티 지역

D; 냉각탑

E;제어실

F; 압축기실

G; 대형 펌프실

I; 단위공정시설(중간위험)

J; 단위공정시설(고 위험)

K; 대기압 저장탱크

H; 단위공정시설(저 위험)

L; 압력 저장탱크

M; 돔형 냉동저장탱크

N; 플레어

O; 입·출하 설비

P; 소화용수 펌프

Q; 소방대

주) / 표시는 안전거리의 요구사항이 없는 것을 뜻하고, ★ 표시는 <표 3>을 참조

P - 134 - 2013

<표 9> 단위공장 내 설비간의 안전거리 (1)

단위: m

		ı										1			1 - 111
	A	В	С	D	Е	F	G	Н	I	J	K	L	M	N	Ο
A	10														
В	10	1													
С	15	1.5	1												
D	15	3	4.5	7.5											
Е	15	3	4.5	7.5	4.5										
F	15	3	4.5	7.5	4.5	4.5									
G	15	3	4.5	15	7.7	7.5	4.5								
Н	30	30	30	30	30	30	30	30							
I	15	15	15	15	15	15	15	30	7.5						
J	10	4.5	4.5	7.5	4.5	4.5	4.5	30	15	/					
К	10	3	4.5	7.5	4.5	3	3	30	15	7.5	1.5				
L	10	3	4.5	7.5	4.5	3	3	30	15	/	3	/			
М	15	15	15	30	15	15	15	30	15	15	15	15	/		
N	15	15	15	30	15	15	15	30	15	15	15	15	/	/	
О	15	15	15	15	15	15	15	30	15	15	15	15	/	/	/

A; 압축기B; 펌프(중간위험)C; 펌프(고위험)D; 반응기(고 위험)E; 반응기(중간위험)F; 반응기(저 위험)G; 탑 및 드럼 등H; 런다운 탱크I; 가열로J; 공랭식 열교환기K; 열교환기L; 파이프랙

M; 비상관리

N; 단위공장 차단밸브 O; 분석기실

주) / 표시는 안전거리 요구사항이 없음을 뜻함.

P - 134 - 2013

<표 10> 단위공장 내 설비간의 안전거리 (2)

단위: m

	T	ı		1			1		- 11. 111	
구 분	A	В	С	D	Е	F	G	Н	I	
A	60	30	75	60	45	60	45	60	60	
В		15	75	30	15	60	30	30	45	
С			1.5× 직경	직경	75	45	30	60	60	
D				0.5× 직경	30	30	15	30	45	
E					15	45	6	30	30	
F						15	15	45	60	
G							_	30	30	
Н								_	30	
I									_	
소화펌프	75	45	75	60	60	45	30	30	_	
비상관리실	30	15				30	15			
물분무시설 조정	15		30			15				
비상 플레어		높이가 8 m 이상 30 m, 스택은 120 m								
파이롯트 플랜트	60	60	75	60	60	60	45	50	60	
대형 냉각탑	45	30	75	60	45	60	45	30	30	
소화전				15	내지 75	m				
가열로	15~30	15	60	60	30	60	30	30	30	

B; 저위험 공정

C; 고위험 탱크

A; 고위험 공정 D; 저위험 탱크

E; 저위험 제품창고

F; 고위험 선적·하역

G; 저위험 선적·하역

H; 서비스 빌딩

I; 보일러실